

신산업 우선허용 체제로의 전환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2020년 5월 15일 혁신경제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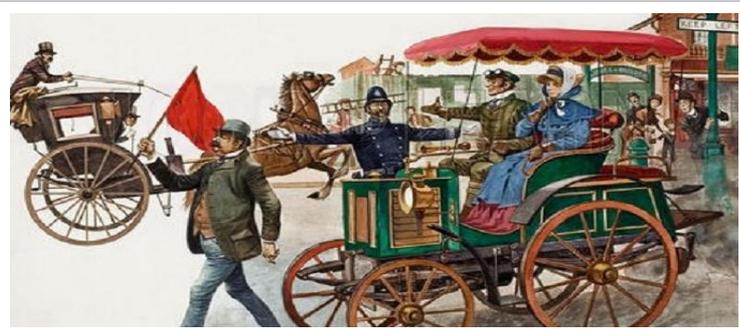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길 흥 근

목 차

- 1 왜 신산업 규제혁신인가?
- 2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2. 현장제기 규제효과
 3.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 3 지난 2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I · 들어가며

영국 붉은 깃발법 (Red Flag Act, 1865년)



신산업(자동차) 대두

마차업자 반발

규제 신설(속도제한, 적기 뒤따르기)

자동차산업 주도권 상실



독일의 아우토반 (Autobahn, 1933년)



영국보다 자동차산업 뒤처짐

아우토반 신설

규제 완화(속도 무제한, 통행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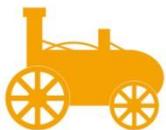
자동차산업 주도권 획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 2016년 다보스 포럼
4차 산업혁명 이해 의제로 제시



- 시대별 산업혁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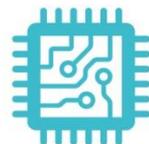
1차 산업혁명
1760~1840년

증기기관 기반
기계화 혁명



2차 산업혁명
19~20세기 초

전기 에너지 기반
대량생산 혁명



3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컴퓨터.인터넷 기반
지식정보혁명



4차 산업혁명
현재

AI, IoT,
빅데이터 기반
초지능 디지털혁명

PLANNED
01:59:14
00:00:00
00:00:00
00:00:00
00:00:00

4차 산업혁명의 개념

- 新 ICT 기반기술을 통해 디지털, 물리, 바이오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으로
경제 · 산업 · 사회 구조의 파괴적 변화 (WEF, 2016년)
-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 감소하고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 (WEF 미래고용보고서, 2016년)
- 2023년에는 의사, 변호사, 중개인, 교수 등 전문직 업무 1/3을 스마트기계가 대체할 것이고,
2030년에는 현재 일자리 90%를 스마트기계가 대체 (가트너,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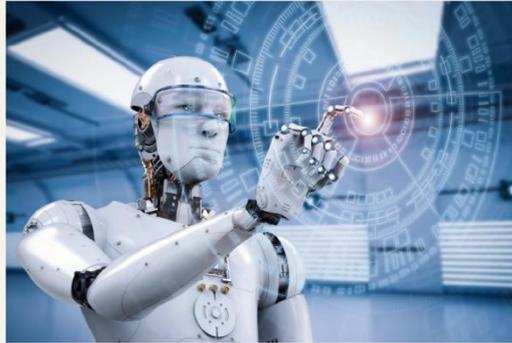
-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 초지능화하는 만물 초지능혁명
- AI와 ICBM(IoT+Cloud+Big Data+Mobile) 결합하여 인간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지능정보사회

➔ 혁신기술은 기존 규제 초월 : 기존 규제와 갈등 불가피

1 4차 산업혁명



ICT 기반 기술융합



기하급수적 기술진보 속도



승자 독식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정책의 핵심

➔ 유연한 규제시스템



미국 : 바짝 고삐 쥐는 트럼프

- 트럼프 대통령 기업 규제 75% 제거 약속
- 글로벌 시가총액 5위까지 미국 IT기업이 차지

2007년		2017년	
1위	페트로차이나	1위	애플
2위	엑손모빌	2위	알파벳(구글)
3위	GE	3위	마이크로소프트
4위	차이나모바일	4위	아마존
5위	중국공상은행	5위	페이스북

* 출처 : 메리 미커(2017년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





일본 : 국가전략적으로 올인하는 아베

- 아베 정부 핵심정책(3가지 화살)
①금융정책 ②재정정책 ③**성장전략** (규제완화와 구조개혁)
- 총리 산하 컨트롤 타워 **미래투자회의 설치** (2015년 9월)
- 7대 전략이 포함된 **신산업 구조비전 발표** (2016년 4월)
-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 추진** (2017년 3월 각의 의결)





중국 : 질주하는 중국

- 중국제조 2025 발표 (2015년 8월)
- 자유무역시범구 연차별 확대 (2016년, 11개 지역)
- 네거티브 규제 강조 (리커창 총리, 2016년 5월)
-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산업 발전



국내 제조업 매출액 감소

• 제조업 매출액 추이 : (2013년) ↑ 1.2% → (2014년) ↓ 1.9% → (2015년) ↓ 4.2%

* 출처 : 한국은행(2016년 5월)

4차 산업혁명 준비 : 45개국 중 25위

* 출처 : UBS(Union Bank of Switzerland, 2016년 1월)

국내 제조업 4차 산업혁명 대응 : 선진국 4년 격차

* 출처 : 산업연구원(2017년 5월)

4차 산업혁명 준비 부족 : 중소기업 93.6%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2016년 12월)

4차 산업혁명 대응 미흡 사유 :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

•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22.3%) > 전문인력 및 인재 부족(18.6%) > 4차 산업혁명 이해부족(18.4%) *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2017년 5월)

4 맥킨지의 한국진단

글로벌 혁신 경쟁과 한국 스타트업 환경

최근 1년간 투자 받은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의 국적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의 사업 모델을 한국 시장
적용 시 규제 저촉 가능성 분석

업체 수



1,160억 달러

해당 업체 수

포함 기업 예시



누적 투자액

* 자료: Pitchbook, 테크앤로 법률 검토 결과, 팀 분석

네거티브 규제검토 기구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2016년 3월~)



- 원칙개선, 예외소명 ·국제적 규제 최소성 ·민간주도
- 500여건 발굴 ⇒ 500여건 개선방안 마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현장방문,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과 함께 과제 발굴·개선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중심으로 상시 검토·조정

* 5대 분과, 전문가 120명

* 출범 이후 200여차례의 현장간담회와 위원회회의를 통해 총 500여건의 핵심과제 발굴, 혁파 ('16년 총 271건 검토, 255건, '17~'19년 총 259건 검토, 240건 규제혁파

신산업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애로 발굴·혁파



무인이동체



ICT 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주요 사례 : ① 개선 사례

예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도로 / 드론 사업범위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도로 네거티브 전환



드론의 사업범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



그간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도

- ✓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두 허용하는 방식
- ✓ 기존의 요건 나열식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규제개선에 한계
 - 정부의 2차례 네거티브 전환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 저조



사후규제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규제 유연성 확보 필요



현장의 목소리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새로운 산업 분야는 규제가 뭐가 있는지 불명확하다.”

“규제를 많이 없앴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규제가 너무 많아서 생활이 불편하다.”



규제를 많이 없앴지만, 새로운 규제가 또 생겨서? 규제혁신은 열심히 했으나, 다급효과가 작은 것들 위주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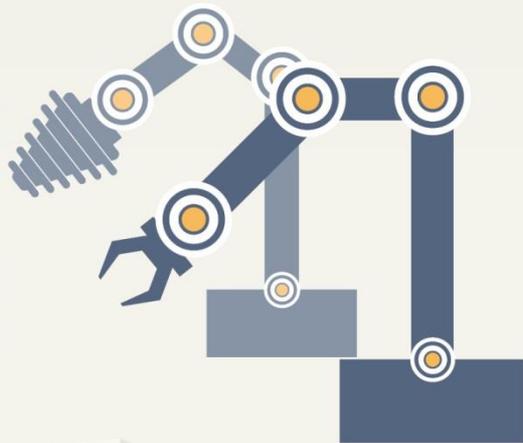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국민 대다수가 없애기를 원하나, 업계가 강력 반발해서? 위에서는 규제를 없앴으나, 지역 현장에서는 그대로여서?

|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도의 함의

● 산업계 요구 : 사전허용 - 사후규제

“신산업 관련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규제해 달라”



신산업 규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산업 우선허용



법·제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입법방식 유연화 + 규제 샌드박스



현장 · 사례

신산업 현장 제기 규제애로 혁파



선제 조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신산업 규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0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신제품·신서비스 시장출시 우선 허용,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 전환 ...

입법 기술적으로
포괄성, 유연성 보완



입법방식
전환



혁신제도
도입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추진 지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 유연화

규제 샌드박스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임시허가

시범사업

규제
신속확인

사후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총 103건 발굴혁파 1차 34건 ('18.1.22) / 2차 65건 ('18.10)

신산업우선허용체계 (입법방식 유연화)

① 포괄적 개념 정의

- ✓ 기존 법령에 요건·기준 등이 과도하게 한정적 기술, 신산업 수용 곤란
→ **포괄적으로 개념 정의**

예시 전자화폐 정의 / 클라우드 펀딩

전자화폐 정의 비교



영국

전자화폐 개념을 포괄적으로 기술,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 수용 가능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한국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① 2개 이상 광역지자체 ② 500개 이상 가맹점 ③ 구입 가능한 재화범위가 5개 이상, 5개 업종 이상 등 열거(전자금융거래법)

→ 전자화폐 요건이 과도하고 세밀히 규정

새로운 금융상품 수용 불가



영국

클라우드펀딩 도입을 금융법상 증권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수용

한국

클라우드펀딩 도입에 2년 소요(자본시장법 개정)

신산업우선허용 체계 (입법방식 유연화)

② 유연한 분류 체계

✔ **현재 제한** → 기술수준을 전제로 한 분류는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 **혁신카테고리 신설**, 분류체계 유연화

자동차 분류체계

EU

모터사이클을 L1~L6로 나누고, 여기 속하지 않는 차량은 L7으로 분류

한국

경형·소형·중형·대형 이륜자동차로만 분류

→ 새 유형 차(ex. 트위지) 출현시 시장출시 애로



사례1 자동차 분류 체계 유연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자동차 종류를 구조, 크기, 배기량 등에 따라 제한적 열거

개선

혁신카테고리 도입하여 차종 구분 유연화

효과

새로운 형태의 차종 신속한 수용 가능 → 기업 투자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촉진
 (예. 새로운 형태 전기자동차 시장출시 가능)



사례2 이식 가능한 장기 등 범위 확대 (복지부, 장기이식법)

현행

이식 가능 장기·조직 13종 열거(신장, 간장, 췌장 등)

개선

윤리위 등에서 인정시 허용 가능토록 혁신카테고리 도입

효과

선진의료기술 탄력적 수용 가능, 새로운 장기이식 기술 촉진
 (예. 안면·족부 등도 이식 가능한 장기 등에 포함 가능)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사항만 열거, 비열거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



종이문서와 동일 효력인 전자문서 확대(61종 → 전부)

전자영수증 발급 등 전자문서 활성화

사후 평가 · 관리

사전심의 → 자율심의, 사후평가 방식 전환



음악영상물 자율심의 후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

신속한 유통 및 제작자 창의성 촉진

1. 신산업 규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01 신산업우선허용 (규제샌드박스)



- ➔ 일정조건(시간, 장소, 규모) 하에 **기존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신사업 시도가 가능토록 **테스트를 허용**하는 방식

*영국에서 금융분야 최초 도입('16), 전세계 20개국 도입 (영국, 일본 등) 또는 추진중(미국 등)

규제혁신 5법



0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국회 계류중)

- ▶ 신산업우선허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원칙 제시

02 분야별 혁신4법 국회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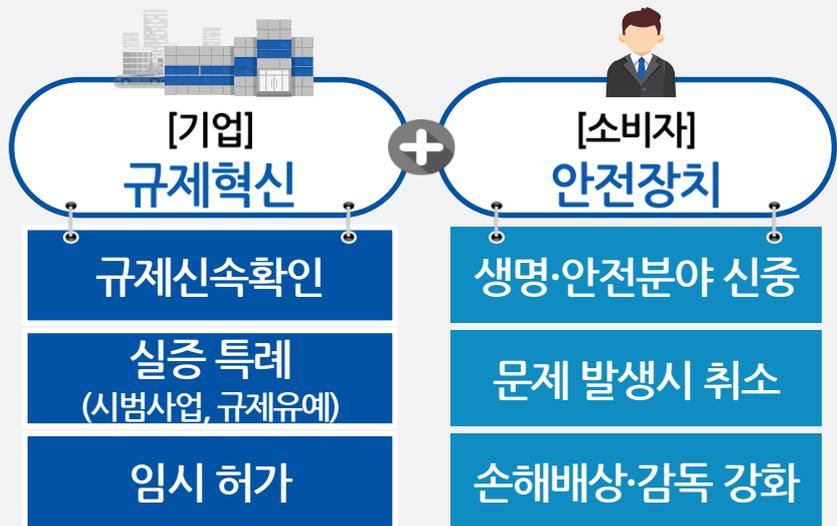
-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19.1 시행)
- ▶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19.1 시행)
- ▶ 지역특구법 개정 (19.4 시행)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18.12.7)
인터넷전문은행법 (18;9.20, 은산분리완화)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일부의원과 시민단체반대에 직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토록 제도지원 시급

1. 신산업 규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01 법·제도 (규제샌드박스)

혁신과 안전의 균형

3+3종 세트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이 살아납니다

- 01 혁신의 장애물 제거 → 신속한 출시**
 - ▶ 핀테크 업체, 금융고객 정보 클라우드 활용
- 02 자유로운 테스트 환경 조성**
 - ▶ 드론 시범공역 허용, 무인선 일정해역 시험운행
- 03 규제 불확실성 해소**
 - ▶ 신산업 현장 제기과제 약1/3, 규제여부 몰라 제기(17)

지역특구법 전면 개정 ⇒ “지역 혁신성장의 가속화”

» 수도권 제외 지역, “규제자유특구” 신설 → 국가 균형발전 + 지역 혁신성장

- 업종 제한없이 혁신성장 관련 모든 분야 대상
- 특구내 사업자에게 기존 201개 규제 특례 적용
- 규제혁신 3종 세트(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특구내 혁신사업 육성위해 재정·세제 적극 지원

» 규제프리존법과 절충 → 「규제 혁신 + 공익적 가치 보호」 조화·균형

- 의료·안전·환경 등 민감영역 제외하고 대부분 특례 적극 반영
- 기존 27개 지역전략산업과의 연속성 보장
- ※ 시·도지사가동일 전략산업재신청시당연지정의제

»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노력 전제 → 규제자유특구 성패를 좌우

-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제안
- 시·도지사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



1. 신산업 규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01

우선허용체제 규제샌드박스

• 적용가능한 사례 (예시)



규제 신속확인

자율주행 농기계

농지외 일반도로
주행 가능여부 등 부처에 문의시
신속 확인



실증특례

배달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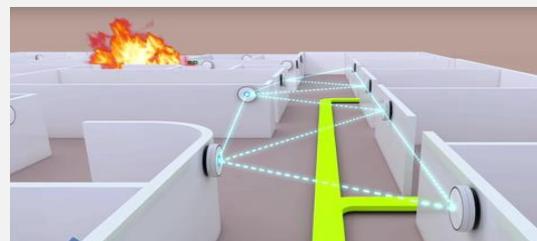
보행자전용도로 운행 금지 불구,
일정 조건하에서 실외테스트 허용



임시허가

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

승인대상 소방용품이
제한적으로 열거 →
임시허가로 시장출시 허용



자율주행차 로드맵 시범구축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을 “역산” 하여 단계별 규제정비 계획 수립



1 발전단계 고려

미국 자동차공학회 6단계 기준



2 시나리오 도출

3개 핵심변수 → 8단계 시나리오



3 규제이슈 발굴

4대 영역, 30개 규제이슈

6단계

Lv.0 (무자율)

Lv.5 (완전자율)

3변수

사람 운전

시스템 운전

신호등 無

신호등 有

시범구간

전체도로

4영역

운전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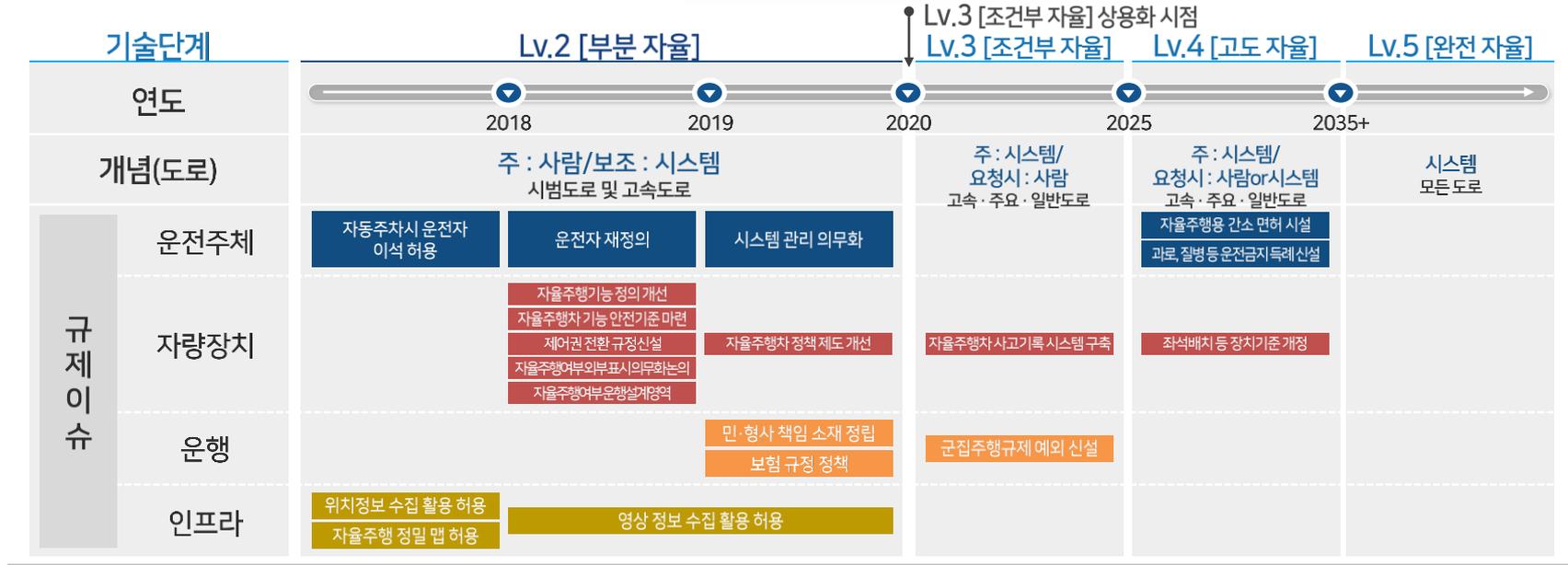
차량·
장치

운행

인프라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자율주행차 로드맵 설계도



1. 입법방식 유연화, 그간의 성과

□ 금융, 바이오, 신소재, 스마트공장, 신의료기기,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산업분야에서 입법유연화 총 580여건 (2020. 5.7일 기준)

* 허용대상 경직적 열거 및 필요시 법령 개정 →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 법령 개정 없이도 신제품·신기술 포섭

◇ **1차**(18.1.22, 규제혁신대토론회) : △금융△바이오△자동차·선박 △ICT 분야 등 **38개**

*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 **2차**(18.10.31, 국정현안조정회의) : △신소재△스마트공장△신의료기기분야 등 **65개**

* ▲체외진단의료기기즉시변경허가대상네거티브화,▲ 시설물점검시드론등신기술활용허용등

◇ **3차**(19.4.18, 중앙부처) : △시장 △기업 △정부 영역 등 **132개**

*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상 산업네거티브화,▲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방식 네거티브화 등

◇ **4차**(19.9.19, 지자체) : △지역산업 △서민경제 △주민생활 영역 등 **142개**

* ▲금융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 포함,▲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대상 확대 등

◇ **5차**(20.5.7, 공공기관) : △신산업 △기존산업 △주민생활 △포용사회 영역 등 **206개**

*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유연화,▲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합리화 등

2. 규제샌드박스, 그간의 성과

- 전세계적으로 영국, 싱가포르, 미국, 호주, 일본, 대만 등 21개국에서 시행 중
-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산업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부여 총 227건 - 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규제혁신 5법, '19. 1월/4월 시행)
 -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2019.1.17일), 4.1일 금융분야, 4.17일 지역특구 분야에서 시행, 현재까지 총 227건('19년 195건, '20년 32건)을 승인
- 영국(연 40여건), 일본(현재 9건)에 비하면 양적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성과

< 부처별 승인(지정) 현황, '19. 12. 19. 기준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	계
건수	102	39	47	39	227

주: 총리실 보도자료 참고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위해 **8대 선도사업 규제혁신**



2.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신

02

테마별 규제혁파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18.10)

시장진입 장벽 해소, 사업자 활동
제약 완화 등 40건 개선

사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과당경쟁 우려" 삭제)
통신판매업(온라인 쇼핑몰)
신고제 폐지 등



창업규제혁신(18.10)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1인·소규모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105건 개선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사례**
업력(6개월)에 상관없이
사회적기업 창업 허용 등



영업·입지규제정비(18.4)

영업요건 완화, 영업 관련
행정절차간소화 등 38건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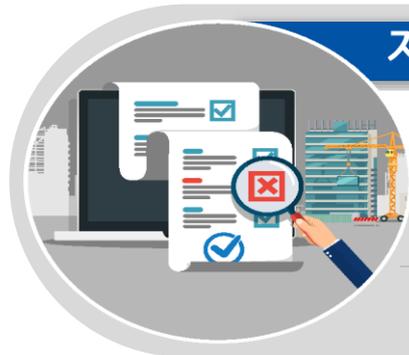
사례 산단내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 허용
시설경비업 인력기준 완화
(20명 → 5명 이상)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파(17.12)

시장진입 장벽 해소, 사업자 활동
제약 완화 등 40건 개선

국유 유휴부지 개발범위 확대 **사례**
(건축개발 → 토지개발도 포함)
관광특구의 도시공원내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10만㎡ → 5만㎡) 등



3. 민생불편·부담 야기 규제 혁신

01 국민불편·기업부담 해소

☑️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사항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시 접수·해결 추진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중기옴부즈만,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통하는 창구
→ 기업 불편·애로 상시 접수·해결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건의 250여건 개선

사례

-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완화 (최저임금 110% 이상 → 최저임금 이상)
-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방식 통일

일반국민·소상공인 불편 접수·처리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300여건 처리

• 소관부처 답변(14일내) → 필요시 소명요청(국조실) / 소명(부처) → 필요시 개선권고(규개위)

» 국민생활 및 자영업자 등 민생관련 건의과제 약 68% 차지

사례

- ✓ 농지 조성중인 간척지의 임시사용 용도 확대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 가능)
- ✓ 공공기관 구내식당 불합리한 위탁 계약관행 개선



규제개혁
신문고

온라인

3. 민생불편·부담 야기 규제 혁신

01 국민불편·기업부담 해소

✓ 행정조사 일제정비(*17.12)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행정조사(608건)를 최초로 전수 실태점검 → 175건 정비

사례

- ✓ 행정조사 주기 완화 및 불필요한 조사항목 감축
- ✓ 유사 행정조사 통합 실시

✓ 온라인·전자문서 규제 정비(*18.5)

»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 → 113건 개

사례

- ✓ 정부예산·기금 관련 영수증 4,800여만건 종이문서 보관의무 폐지
- ✓ 온라인 사업장에는 오프라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설·입지규제 면제·완화 (의료기기, 중고차 관련업 등)

✓ 정부 인증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18.6)

» 정부 인증·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 → 157건 개선

사례

- ✓ 시험검사 처리기한 명시
- ✓ 시험검사 지연사유 사전 공지 등

3. 민생불편·부담 야기 규제 혁신

02

중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

- ☑ 동일한 규제라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규제부담을 더 크게 인식
 - ➔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 차등화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

- » 규제 신설·강화 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규제 전부 또는 일부 면제·유예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18.10), 근거 마련

사례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매뉴얼 배포('18.10)

- ✓ 연면적 5천㎡ 미만 건축물
 - 녹색건축 인증제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
- ✓ 장기요양기관 예·결산 편성·제출의무 적용시기
 - '18.5 시행, 다만 정원 20인 미만 시설은 '19.5 시행

- »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마련 ('19.상반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이해갈등, 가치갈등으로 인해 해결이 지연되어온 **Big Issue**를 선정·혁파 (주로 대통령·총리 주재 회의)

핵심 과제

개인정보와 빅데이터, 의료빅데이터 및 정밀재생의료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공유경제 (승차, 숙박 공유 등 플랫폼 비즈니스)



의료기기 규제혁신
(*18.7.19)

- 첨단의료기기 조기 시장진입 지원
- 체외진단분야 '先시장진입-後신의료기술평가'로 전환
시장진입 기간 최대 390일 -80일 이내로 단축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18.8.7)

-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지분 보유한도 확대
현행 4% → 34%



개인정보 규제 혁신
(*18.8.31)

-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가명정보 이용범위 확대 등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마련
(*18.9.27)

- 해외여행 국민불편 해소 및 여행수지 개선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데이터 3법 통과
(*20.1.9)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가명처리후 개인정보 활용

주요 사례 : ② 미흡 사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법적근거 미흡

* 대안으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제공



유전자 가위 치료 범위를
법령으로 제한

* 생명윤리법 제47조



원격화상 투약기
도입 논란

* 안전성 논란, 관련업계 반발

주요 사례 : ① 시장진입 제한 규제

- 사물 위치정보 수집 · 소유자 사전 동의

* 위치정보법 개정



- 금융분야 높은 진입장벽

* 과도한 자본금 요구 등



7 여전히 먼 가야할 길 : 불합리한 신산업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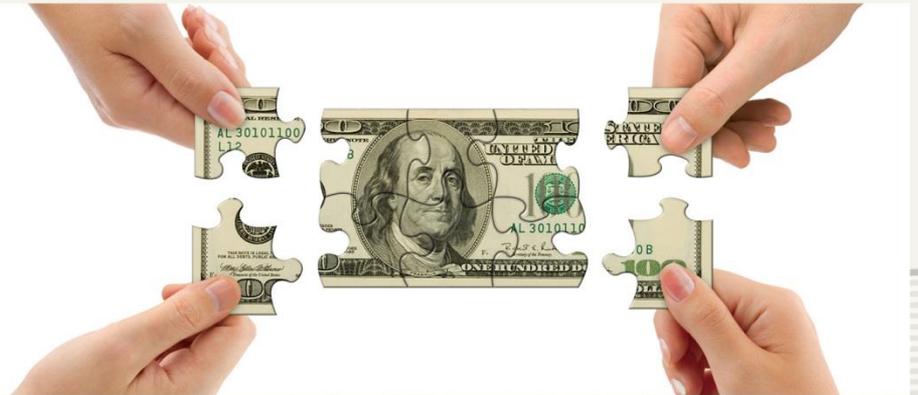
| 주요 사례 : ② 견고한 칸막이 규제

- P2P 관련 근거 법률 부재, 대부업 등 우회 영업



- 새로운 금융상품 수용 불가

*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2년 소요
(자본시장법 개정)



7 여전히 먼 가야할 길 : 불합리한 신산업 규제

주요 사례 : ③ 미흡한 갈등조정 시스템

- 차량공유서비스업 (Uber)
- 타다 vs. 자동차운수사업법



- 공유숙박업 (Airbnb)



조직화된 소수의 이익 > 국민 전체의 이익 ⇒ “갈등조정시스템”

7 4차산업혁명의 쓰나미 : 위기? 또는 기회?



신산업. 신기술과 갈등, 그리고 “갈등조정시스템” 제도와 문화

Ⅲ · 맺는 말 : 규제혁신, 이제 공유와 확산입니다



-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 (‘18.10.18)
- 창업 규제 혁신방안 (‘18.10.24)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성과 (‘18.10.31)
-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18.11.8)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18.11.15)
- 총리 주재 제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18.11.21)



- 지역경제 맞춤형 규제혁신 (12월)
- ‘18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실적(12월)



» 후속조치 적극 추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법령 전수조사

- 정부내 규제(인허가 등) 포함 법령 1,500여개 전수조사
- 한정적·열거적 규정 발굴 및 부처 협의·조정

규제샌드박스법 통과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18.12)
- 업계 릴레이 현장설명회 (‘18.10~12)
- 전용 홈페이지 구축 (‘18.12)
- 가이드북 제작·배포(‘18.12)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확산

-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타 신산업 분야 로드맵 구축
-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19년 10.17일 발표



Ⅲ 맺는 말 : 신산업 우선허용체제의 핵심메시지

1. 사고의 전환: “이제 시장을 믿고 자율에 맡기자”

⇒ 이제 공유와 확산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와 시장의 역할 변화

- 국가주도 성장 → 시장주도 성장 (혁신기업&민간지원)
- 시장통제적 사고 → 시장자율 확대↑, 책임성은 강화↑

2. 규제의 악순환 : 낮은 사회적 자본

- 저신뢰 사회 ⇒ 규제 강화↑ ⇒ 정부·국민·기업 제약⇒ 사회적 비용↑

3.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회복과 혁신 필요

- ① 정부혁신 (행정문화, 거버넌스 혁신)
- ② 시장혁신 (자율성에 상응한 책임성 강화 ⇒ 사후규제시스템)
- ③ 사회혁신 : 변화에 대한 사회 공감대 확산 사회의식 변화 필요



감사합니다